

**사자의 유해를 담은 초상을 불법입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게재하였을 경우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권리침해에 해당**

Mietterrand et autres c/ Thérond et Cogédipresse
Tribunal do grande instance do Paris(파리 지방법원), 1997 년 1 월 13 일
LEGIPRESSE Revue mensuelle du droit de la communication
통권 135 호, 1997 년 3 월(제 2 호). 21-25 면

사실관계

종합시사 주간잡지 '파리-마치' (Paris-Match)는 1996 년 1 월 25 일자 38, 39, 40, 41 면에 프랑스 제 5 공화국의 제 5 대 및 제 6 대(1981 년~1995 년) 대통령을 역임한 프랑수와 미테랑(Françoise Mitterrand) 전 대통령이 침대에서 사망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이를 게재 하였는바, 이 잡지는 1996 년 1 월 16 일부터 가판대에서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의 부인인 다니엘 미테랑(Danielle Mitterrand) 여사는 1996 년 1 월 16 일자로 파리 검찰청에 자기 자신과 미테랑 전 대통령의 아들들인 장 크리스토프(Jean Christophe), 지베르(Gibert) 미테랑(Mitterrand) 그리고 딸인 마라진느 정조(Marazine Pinget)의 공동명의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즉 프랑수와 미테랑이 침대에서 사망한 모습을 담은 사진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불법적으로 입수된 것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atteinte à l'intimité de la vie privée)한 것 이라는 이유로 '파리 -마치'의 발행 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다. 고소를 접수한 파리 경찰청은 문제의 사진원판의 저작자를 찾으려 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검찰은 1996 년 7 월 31 일자로 '파리-마치'지의 발행인인 로저 테롱(Roger Thérond)을 소환하고, 동시에 '살 코데지프레스'(Sarl Cogédipresse)에 대해 1996 년 9 월 10 일자로 청문을 행하게 되었다. 그것은 1996 년 1 월 16 일부터 1996 년 2 월 25 일자 '파리-마치' 지에 미테랑 전 대통령의 사망한 모습을 담은 작가가 알려지지 않은 사진이 생전에 미테랑 자신의 동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게재된 것을 일만이 접할 수 있도록 파리와 프랑스 영내에 배포한 것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관련된 것이다. 이 사진은 미테랑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본인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촬영한 것으로서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형법규정은 제 6 장 인격에 대한 침해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다시 제 1 절 사생활 침해, 제 2 절 초상침해, 제 3 절 무고, 제 4 절 비밀침해, 제 5 절 전관정보처리에 의한 권리침해, 제 6 절 유전학적 방법에 의한 침해, 제 7 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으로 나뉘어 규정되고 있다. 1810 년에 제정된 프랑스형법은 그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친 바 있으며, 특히 1992 년 7 월 22 일에는 사실상 전면개정이 단행된 바 있다. 형법제정 이후 1996 년 3 월 13 일까지 11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226-1 조(사생활의 침해) ① 방법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타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고의로 침해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 만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당사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또는 비밀스럽게 전달된 말을 기록·녹취 또는 전파하는 행위, 2. 당사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사적 장소에 있는 당사자의 사진을 촬영·녹화 또는 전파하는 행위. ②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전항 각 호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그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 226 조(사적 비밀의 이용) 제 226-1 조 제 1 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로 인하여 얻어진 모든 기록이나 문서를 보관하거나, 공증 또는 제 3 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게 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지 간에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전조와 동일한 형에 처한다. 문자나 시청각매체에 의한 보도를 수단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책임자의 결정은 언론보도를 규제하는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한다. 제 226-6 조(친고죄) 제 226-1 조 및 제 226-2 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권리승계 인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26-31 조(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본 장의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 1 호 내지 제 4 호 생략, 제 5 호 제 226-1 조 내지 제 226-3 조, 제 226-8 조, 제 226-15 조 및 제 226-28 조의 죄를 범한 경우 범죄의 실행행위에 제공되거나 또는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부터 발생한 물건의 몰수. 제 226-3 조에 규정된 장치는 몰수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제 1 논점 : 불가수리성(irrecevabilit)에 대하여

미테랑 전 대통령 가족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피고측의 항변이 제기되었다. 첫째, 형법 제 226-6 조의 친고죄 규정에 따라 사생활의 평온의 존중에 관한 고유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둘째, 사생활의 평온의 침해는 사자의 승계인의자격으로 제소할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다. 비록 사자의 사진이 사자의 생존시 사전에 동의를 얻어 사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사자의 사생활의 평온의 침해문제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사생활의 평온의 침해범죄에 관하여 형법 제 226-6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226-1 조 및 제 226-2 조에 대하여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권리승계인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생활의 평온의 침해에 대하여 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생사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생활의 평온을 존중할 권리는 당사자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된다는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서 상속인이 초상권을 승계하기 위하여서는 사자가 생존 시에 특별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형법 제 226-1 조 규정상의 "당사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론적으로 미테랑 대통령의 가족들은 형법 제 226-6 조의 권리승계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측이 주장하는 불가수리성의 주장은 이유없어 이를 배척한다.

제 2 논점 : 공소권(action publique) 없음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부차적으로 제기한 범죄를 구성하는데 '사전적인 조건'의 결여를 이유로 한 면소주장에 대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형법 제 226 조의 "형법 제 226 조 제 1 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문서"라는 규정에 비추어보면 문제의 사진의 작가가 그 사진을 촬영할 시점에 미테랑 대통령이나 그 권리승계인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의도를 가져야 한다고 추론할 수 있고, 특히 피고의 입장으로는 문제의 사진의 작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는 또한 범죄로서의 구성요건으로서 특별히 요구되는 의도적인 기망의 의사라는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즉 문제의 사진이 원래 불법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첫째, 사진을 게재한 발행인으로서 문제의 사진이 창밖에서 촬영된 것도 아니고 미테랑 전 대통령의 사저인 아파트 내부에서 촬영된 것일 뿐만 아니라, 미테랑 전 대통령의 가족이 사진의 게재에 대하여 어떠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한 적도 없음에 비추어 문제의 사진 촬영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은 사진의 게재는 프랑스 국민으로 하여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액세스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빅토르 위고, 마르셀 프루스트, 나폴레옹 1 세 등의 침대에서 사망한 모습을 담은 초상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증언을 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신 형법 제 226-2 조 제 1 항에서는 "제 226 조 제 1 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로 인하여 얻어진 모든 기록 또는 문서를 보관하거나, 공중 또는 제 3 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인식 또는 인식할 수 있게 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건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전조와 동일한 형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의 사진은 르 플레이(Le Play)가에 있는 미테랑 전 대통령의 개인 아파트의 방에서 그의 사망한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는 1996 년 1 월 8일(월요일)부터 1 월 10일(수요일)사이 기간동안에는 미테랑 전 대통령의 가족들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만이 출입할 수 있었으며, 그 경우에도 아파트 입구에서 통제를 받은 연후에 유해가 안치된 방에 출입하는 것도 통제되는 등 2 중의 통제가 행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측으로서는 미테랑 전 대통령의 가족으로부터나 혹은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문제의 사진촬영에 대한 동의를 얻었음과 더불어 고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만 한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장 가뵐(Jean Gabin)의 유해와 관련된 1980 년 10 월 21 일 형사부의 판례를 인용하고 있다: "사후에 모든 공표를 금지한 사자의 생존시 공표반대의사와 사후에 권리승계인의 반대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판례에 비추어 본다면 사자가 생전에 그의 의사를 분명히 개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권리승계 인의 반대 의사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진의 공표 즉 '파리-마치' 지에 게재한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자의 유해를 촬영한 사진을 사적 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유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 권리승계인은 문제의 사진원판을 일반에 배포하였다는 데에 그 비판의 주안점이 있다.

제 3 논점 : 사진원판의 공개에 대한 동의에 관하여

피고인이 전 미테랑 대통령의 생전에 사전 동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동의가 명시적인 것인지 묵시적인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항변은 미테랑 전 대통령 이 생전에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피고측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일 뿐이며, 이 점에서 관한 사자는 생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특별히 의사를 표명 한 바 없음이 명백하다.

게다가 피고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문제의 사진원판의 공표에 미테랑의 가족이 동의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즉 문제의 사진이 게재된 '파리-마치'지가 가판대에 판매되기 시작한 1996 년 1 월 16 일 바로 그 날 미테랑 전 대통령의 가족이 고소를 제기하였음에 비추어 가족들은 문제의 사진의 공표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동의도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반면에 경찰이 조사한 내용과 미테랑의 가족과 절친한 관계에 있고 문제의 사진을 '파리-마치' 지에 게재하는 데 서명을 한 바 있는 '파리-마치'의 기자인 클로드 아줄래(Claude Azoulay) 씨의 발표에 의하면, 1996 년 1 월 20 일의 청문에서 미테랑 전 대통령의 미망인인 다니엘 미테랑 여사는 문제의 사진원판의 공개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는 가족의 입장을 밝혔으며, 또한 그녀는 문제의 사진이 공개되기 전에 이미 이러한 사진원판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그녀는 잡지의 배포금지를 위하여 1996 년 1 월 15 일 20 시경에 클로드 아줄래씨에게 전화를 하여 '파리-마치'의 발행인인 로저 테롱이 이 문제에 개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클로드 아줄래 씨는 이를 즉시 전달하였음이 신문서 상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미테랑 전 대통령의 유해 사진촬영을 위하여 그 가족의 동의를 획득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고, 바로 이 문제는 사진작가가 가족 몰래 불법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점이 권리 승계인인 가족들에 의하여 강력하게 항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진작가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구성하는데 아무런 문제 가 없다.

제 4 논점 : 사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려는 의사에 관하여

특정한 사자의 유해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바로 그 개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제의 사진이 망원렌즈를 통하여 촬영되었는가 또는 방안에서 촬영되었는가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1996 년 8 월 8 일자 Jean-Claude Dewolf 의 전문가 보고서 참조).

1996 년 1 월 18 일 경찰에서 행한 신문에서, 로저 테롱 씨는 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문제의 사진의 작가를 밝히기를 거부하였으며, 사진의 전달과정은 투명하지 않으며 몰래촬영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제 5 논점 : 문제의 사진원판의 역사적 성격에 관하여

현행법상 프랑스 국민은 전직 프랑스 대통령 이라는 공인의 죽은 모습을 담은 초상을 감상할 권리를 갖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프랑스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졌든지 불문하고 모든 개인은 사생활의 평온을 방해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 공인 특히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또한 전직 대통령의 유해모습을 담은 사진은 전체 프랑스 국민에게 역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하더라도 그러한 사진이 '파러-마치'와 같은 언론매체에 배포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파러-마치'의 발행인인 로저 테롱에 귀책 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다고 본다.

시신과 초상의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요소를 위반하여 미테랑 전 대통령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엄중함과 이 사건이 안고 있는 상업적 성격에 비추어 당 법원은 피고에게 10 만 프랑의 벌금을 명한다.

제 6 논점 : 민사소송에 대하여

미테랑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은 가집행적인 손해배상으로서 1 프랑을 요구하고, 나아가서 법원의 판결요지를 '파리-마치'의 다음 호 표지 1 면에 게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1 호 연체 시마다 각기 5 만 프랑의 연체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테랑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에 비추어 보건대, 유가족 각자에게 1 프랑씩 상징적인 손해배상을 명한다.

반면에 미테랑의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잡지에의 게재 건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이러한 주장은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서, 불법적인 사진의 게재에 따른 권리침해와 '파리-마치'에 대한 미테랑 유가족들의 불만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만 존재하였다. 왜냐하면, 유책적인 사진이 게재된 지 불과 몇 주 후에, 미테랑 유가족 중 여러 사람이 '파리-마치'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터뷰를 하거나 기자의 취재에 응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저간의 사정은 다음과 같다. 다니엘 미테랑 여사에 대한 취재기사가 1996 년 1 월 1 일자 4 면에 걸쳐 보도된 바 있다. 1996 년 3 월 7 일자 '파리-마치'에는 다니엘 미테랑 여사의 '모든 자유에 관해서' (En toutes libertés)라는 저서의 출간에 즈음하여, 그녀에 관한 취재기사와 더불어 그녀의 가족사진과 인터뷰 및 1996 년 1 월 6 일에 쓰여진 그녀의 매우 개인적인 편지에 관해서 16 면에 걸쳐서 보도한 바 있다. 1996 년 3 월 7 일자 '파리-마치'에는 '프랑스 자유재단' (Fondation France Liberté)의 활동상에 관한 보도를 포함하여 4 면을 할애한 바 있다. 1996 년 3 월 18 일자 '파리-마치'에는 다니엘 미테랑 여사와의 인터뷰를 실고 있다. 1996 년 6 월 6 일자 '파리-마치'에는 '프랑수와 미테랑 연구소'(Institut Franfois Hitlerland)의 설립에 즈음하여 마자린느 핑조 양에 관하여 8 면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1996 년 8 월 1 일자 '파리-마치'에는 다니엘 미테랑 여사와의 인터뷰 기사를 3 면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위와 같이 '파리-마치'가 미테랑 가족에 관해 할애한 기사에 비추어 보건대 미테랑 가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을 '파리-마치'에 게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긴급성이 없으므로 본 결정의 가집행을 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판결주문

피고측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배척한다. '

'파리-마치'의 발행인인 로저 테롱 씨는 1996년 2월 25일자 '파리-마치' 38, 39, 40, 41면에 두 장의 미테랑 전 대통령의 유해 사진을 게재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미테랑 자신이나 권리승계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 제 226-2 조, 제 226-6 조 및 제 226-31 조에 비추어 보건대,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였으므로 10만 프랑의 벌금을 명한다.

피고는 미테랑의 유가족들인 원고에게 각기 상징적인 금액인 1프랑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한다.

원고가 요구한 기사게재는 이를 기각한다.

살 코데지프레스는 민사상 책임을 진다.

이 결정에 대한 가집행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판결해설

(이와 관련하여서는 Théo Hassier 교수와 Virgine Lapp 교수의 평석 참조)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의 사망한 모습을 불법적으로 촬영하여 이를 잡지에 게재한 '파리-마치'의 발행인인 로저 테롱 씨가 유죄라는 점에 관하여서는 놀라워할 일이 전혀 아니다. 이러한 결정은 형법상 사적 장소에서의 사진 촬영을 금지한 규정에 입각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초상권보다는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권리가 주로 문제되었다.

사자의 유해 라는 초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자의 상속인에게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권리가 승계될 수 없다는 피고측의 주장은 고려해 볼만한 여지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피고측의 주장을 회피하고 배척한 것은 불투명한 점이 있다.

피고측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은 형법 제 226-6 조에 의거한 친고죄로서 미테랑 전 대통령의 상속인에게는 이러한 고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고소인들은 사자의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상속인에 불과하며, 인격권의 본질에 비추어 보아서 그것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을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상속인의 정신적인 측면이 강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 226-6 조에서 친고죄의 고소인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승계인의 개념은 중립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속인이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권리승계인이 될 수 있을 지는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징벌과 관련하여서도 불투명한 점이 있다. 형법상 최고 30만 프랑의 벌금을 명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10만 프랑의 벌금을 명하였고, 유사한 장 가방 유해 사진사건에서는 6천 프랑의 벌금을 명한 바 있다(Crim. 1980. 10. 1, 1981, 72. Linden 주석). 한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고소인 측에 대하여 각기 1프랑의 상징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그런데 또 다른 사건에서 법원은 '파리-마치'에 어떤 가수의 유해 사진을 게재한 데 대하여 미망인에게 5 만 프랑, 두 명의 자녀에게는 각기 2 만 5 천 프랑의 손해 배상을 명한 바 있다(Paris, 1983. 4. 26, D. 1983, 376, Lindon 주석).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에서 는 비교적 관대한 손해배상을 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정기간행물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 비교적 법원이 관대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특히 '파리-마치'가 문제의 사건 이후 보여준 성의를 평가하여 고소인의 판결문 게재청구를 배척 한 것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생활의 존중권은 사망으로 소멸하는 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의 유해에도 지속된다고 판시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고소인이 사자의 유가족이 아닐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한편, 피고측의 주장에 의하면 불법적인 사진을 촬영 한 사진 작가는 처벌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진작가는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진의 출처에 관해서 밝힐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언론사 발행인이 사진작가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직업적인 비밀을 이유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법원으로서의 발행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사진촬영과 관련하여 법원은 그 사진이 사적 장소 내부에서 촬영되었느냐 또는 외부에서 망원렌즈로 촬영되었느냐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법원은 피고측이 제기한 사진의 역사적 가치문제 즉 정보권(droit 1'information)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오로지 형법 제 226-1 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당사자의 동의 하에서만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당사자의 동의는 사진촬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표에 대한 동의까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장 가뱅 유해사진 사건(TGI, 1977년 1월 11일 판결)에서도 바로 이러한 이유로 민·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제 17 조에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프라이버시 권이 사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상속인에게도 인정될 것인지에 관해서 학자들 사이에 이론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성낙인, 영남대 법학과 교수 역).